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 
람

기관위원장

제1131호 2015. 11. 12.(목)

## 차 례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15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-15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 
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----- 11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- 1544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11월 12일

#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## 1. 개정이유

- 「개정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- 예산편성요구서 제출기한 1개월 빨라짐에 따라 소요예산 신청기간을 앞당기하고자 함
- 직종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허용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”란을 “생년월일”로 수정
- 회계년도 개시 “3개월 전”에 연간 소요액을 신청하였으나, 예산편성요구서 제출기한에 맞추어 “4개월 전”으로 변경
- “공무원 기능8등급 상당”을 “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”으로 수정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개정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# ※ 의견제출처

- 주 소 : (우22726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 
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
- 전화번호 : 032-560-4161 (FAX 560-2726)

### 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의결주문

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### 2. 개정이유

- 「개정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- 예산편성요구서 제출기한 1개월 빨라짐에 따라 소요예산 신청기간을 앞당기하고자 함
- 직종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허용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”란을 “생년월일”로 수정
- 회계년도 개시 “3개월 전”에 연간 소요액을 신청하였으나, 예산편성요구서 제출기한에 맞추어 “4개월 전”으로 변경
- “공무원 기능8등급 상당”을 “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”으로 수정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개정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개 정 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 참조”
- 다. 예 산 수 반 사 항 : “해당 없음”
- 라. 관계 법령 발취 : “별지 참조”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단서 중 “서구”를 “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, “위탁 관리”를 “위탁·관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거부시”를 “거부 시”로, “위탁관리”를 “위탁·관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신청자중”를 “신청자 중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와”를 “각 호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인천광역시 서구”를 “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마을주민이외”를 “마을주민이외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만료시는”을 “만료 시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기타수입”을 “그 밖의 수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간”을 “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경과후 1월이내”를 “경과 후 1개월 이내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의 “공무원 기능8등급 상당”을 “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”으로 수정하며, 제2항 중 “선원의 인건비는 「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”을 “선원의 인건비는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”로, “”를 “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익월5일전까지”를 “익월 5일 전까지”로,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

다.

제10조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2호서식)

**정서진호의 운항일지**

년 월 일

| 선박명                  | 정서진호 | 선박소유자        |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출항지                  |      | 도착지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출항시간                 |      | 도착시간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승선인원                 |      | 안전수칙<br>준수사항 | 1.승선인수 2.화물 |     |
| 기 타<br>정비사항<br>(주유량)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승 선 자 명 부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연번                   | 성명   | 생년월일         | 주 소         | 비 고 |
| 1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2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3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4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5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6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7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8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9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10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11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12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13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14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15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16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17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18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19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| 20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|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| 개정안  |
|--|--|
| <p>제2조(운영 및 관리) ①정서진호 운영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한다. 다만, 정서진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<u>서구</u> 원창동 세어도 주민대표(이하 "위탁운영자"라 한다)에 <u>위탁</u> 관리할 수 있다.</p> <p>②<u>제1항의 규정에 의거</u>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<u>거부</u>시 주민대표가 아닌 제3자(이하 "위탁운영자"라 한다)에게 <u>위탁</u>관리할 수 있다.</p> <p>③제2항의 경우 정서진호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<u>신청자</u>중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.</p> <p>제4조(이용자의 범위) 정서진호를 승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<u>각호</u>와 같다.</p> <p>1. <u>인천광역시 서구</u> 원창동 세어도 주민</p> | <p>제2조(운영 및 관리) ①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서</u><br/><u>구</u>(이하 "구"라 한다) -----<br/>----- <u>위</u><br/><u>탁</u>·<u>관리</u>-----.</p> <p>②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<br/>-----<br/>- <u>거부</u> 시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위탁</u>·<u>관리</u>-----.</p> <p>③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신청자</u> 중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제4조(이용자의 범위) -----<br/>----- <u>각</u><br/><u>호</u>와 -----.</p> <p>1. <u>구</u> -----<br/>-----</p> |

2. 부득이하게 세어도를 방문하  
는 마을주민이외의 승객

3. (생략)

제5조(위탁기간) 위탁 운영기간은  
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는 그  
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예산 및 결산) ①정서진호  
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위탁  
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.

②위탁운영자는 회계연도 개시  
되기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년  
간 소요예산을 신청하여야 한  
다.

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  
하여 신청받은 소요예산을 조정  
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 
반영하여야 한다.

④위탁운영자는 매회계년도 경  
과후 1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 
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 
구청장은 그 결산내역을 검사하  
여야 한다.

제7조(인건비) ① 선장 인건비는  
공무원 기능8등급 상당으로 계  
상한다.

②선원의 인건비는 「인천광역  
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  
제근로자 관리 규정」에 준하여

2. -----  
--- 마을주민 이외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위탁기간) -----  
----- 만료 시는  
-----.

제6조(예산 및 결산) ①-----  
-----  
--- 그 밖의 수입-----.

②-----  
----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 
연간 -----  
-.

③----- 제2항에 따라 ---  
-----  
----- 해당 -----  
-----.

④-----  
경과 후 1개월 이내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7조(인건비) ① 선장 인건비는  
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으로 계  
상한다.

②선원의 인건비는 「인천광역  
시 서구 공무원근로자와 기간제  
근로자 관리 규정」-----

계상한다.

제8조(지도, 감독) ① (생략)

②위탁운영자는 매분기 익월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표에 의거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.

제10조(운항기록관리) 정서진호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항일지에 의거 정서진호 운항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.

제8조(지도, 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익월5일 전까지 -----  
----- 따라 -----  
-----.

제10조(운항기록관리) -----  
-----  
----- 따라 -----  
-----.

제11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--  
-----.

# 관계 법령

## □ 개인정보 보호법

**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**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, 계획의 수립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·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3.8.6.]

**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**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4.3.24., 2015.7.24.>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24.>

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, 계획의 수립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·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4.>

[본조신설 2013.8.6.]

[시행일 : 2016.1.1.] 제24조의2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-1552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5년 11월 12일

###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#### 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」 개정사항 반영
  -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이월 확정 및 장부 마감 기한 조정
  - 지방자치단체 세입·세출 운용상황 주민 공개 의무에 따른 공개 표준서식 마련
  -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·보완 및 서식정비

#### 2. 주요내용

- 예산이월 확정 및 장부마감 기한 조정
  - 이월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이월요구서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제출,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 확정
  - 이월장부정리 마감일 조정(기존 4월1일 → 2월10일)
- 서식정비
  -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 매일 공개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 및 자금운용기록부 개정
  - 가상계좌를 통한 지출금 반납 고지서 신설
 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내용이 들어있는 “별지 제83호서식” 삭제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. 12. 2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(참조 : 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560-4158) 또는 팩스(560-2720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### 4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

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1부.

#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## 1. 의결주문

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」 개정사항 반영
  -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이월 확정 및 장부 마감 기한 조정
  - 지방자치단체 세입·세출 운용상황 주민 공개 의무에 따른 공개 표준서식 마련
  -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·보완 및 서식정비

## 3. 주요내용

- 예산이월 확정 및 장부마감 기한 조정
  - 이월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이월요구서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제출,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 확정
  - 이월장부정리 마감일 조정(기존 4월1일 → **2월10일**)
- 서식정비
  -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 매일 공개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 및 자금운용기록부 개정
  - 가상계좌를 통한 지출금 반납 고지서 신설
 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내용이 들어있는 “별지 제83호서식” 삭제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개 정 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 참조”
- 다. 예 산 수 반 사 항 : “해당 없음”
- 라. 관계 법령 발췌 : “별지 참조”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날로부터 10일 이내에”를 “날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날로부터 30일”을 “날부터 10일”로 한다.

제34조제2항 중 “4월 1일”을 “2월 10일”로 한다.

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-1호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.

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별지 제31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59호서식, 제7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83호서식을 삭제한다.

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31-1호서식)

# 반 납 고 지 서

## 고 지 서

## 영 수 필 통 지 서

## 영 수 증

|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년도  | 회계                   |
| 고지번호  | 20xx-xxxxxxx-xxxxxxx |
| (조직)  |                      |
| (정책)  | (단위)                 |
| (세 부)   | (통계목)                |
| (편성목)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금   | 원(금 원)               |
|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<br><br>납입기한    년 월 일<br><br>년 월 일<br><br>지출원 성명    인 |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xxx은행   | xxxx-xx-xxxxxxx      |
| (반납자)   | 귀하                   |

|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년도  | 회계                   |
| 고지번호  | 20xx-xxxxxxx-xxxxxxx |
| (조직)  |                      |
| (정책)  | (단위)                 |
| (세 부)   | (통계목)                |
| (편성목)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금   | 원(금 원)               |
|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.<br><br>년 월 일<br>금고    인<br><br>(반납자) 성명 |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xxx은행   | xxxx-xx-xxxxxxx      |
| 지출원 귀하  |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회계                   |
| 고지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xx-xxxxxxx-xxxxxxx |
| (조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(정책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단위)                 |
| (세 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통계목)                |
| (편성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(금 원)               |
| 위 금액을 영수함.<br><br>년 월 일<br>금고    인 |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xxx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xxxx-xx-xxxxxxx      |
| (반납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귀하                   |

<작성요령> 붉은색 글씨로 기재

(별지 제59호서식)

### 자 금 운 용 기 록 부

| 연월일 | 적요 | 기관명 | 지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환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잔액 | 비고 |
|-----|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|
|     |    |     | 정기<br>예금 | <u>MMDA</u> | 기타<br>예금 | 차입<br>또는<br>대여 | 계<br>(1) | 정기<br>예금 | <u>MMDA</u> | 기타<br>예금 | 차입<br>또는<br>대여 | 계<br>(2) |    |    |
|     |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|    |

<기재요령> 비고란에는 환입여부를 표시





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.

③ (생략)

제41조(지출금의 반납절차)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(별지 제30호서식)에 따라 반납고지서(별지 제31호서식)를 발부하여야 한다.

<단서 신설>

② (생략)

③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----- 2월 10일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지출금의 반납절차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다만,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-1호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<삭제>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재정법 제8조(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. 다만,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,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.

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·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. [전문개정 2014.5.28.]

### □ 지방재정법 제60조제5항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)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5.13.>

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



## 인천광역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### 제목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 통보

1.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- 272X(2015.09.23)호와 관련입니다.
2. 행정자치부로부터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(행정자치부 훈령 제40호, 2015.09.22)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 통보되어 알려 드리오니,
3. 각 군구에서는 개정절차 기간단축 등을 통해 신속히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※ 행자부 홈페이지(정책자료>법령정보>훈령/예규/고시)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행정규칙)에 게시
4. 특히, 이번 개정된 기준에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이월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**이월요구서 제출 및 확정 기한을 단축**하고, 효과적인 부채관리를 위하여 **부채관리관**을 기존 예산업무담당과장에서 기획관리실장급으로 **상향 지정**하는 등 예산부서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만큼,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 통보(공문) 1부.  
 2.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 요약 1부.  
 3. 신구조문대비표 1부.  
 4.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 전문 1부. 끝.